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로 신설 및 교체된 무대장비(기계, 조명, 음향) 등에 대한 구성 목록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
- 나. 지역 문화 진흥 및 시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공연 개최 시 관람료 할인을 위한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관 사용료 중 부속 설비의 변경 사항 및 구성 등 정비(안 별표1)
- 나.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별표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합의되었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중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람료 할인 등)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해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할인 대상과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기획공연 관람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과 별

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관 사용료 기준표 (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대공연장	1 일(09:00~22:00)	350,000	1. 행사용 대관시 • 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 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 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오전(09:00~12:00)	100,000	
	오후(13:00~17:00)	130,000	
	야간(18:00~22:00)	160,000	
소공연장	1 일(09:00~22:00)	120,000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오전(09:00~12:00)	40,000	
	오후(13:00~17:00)	50,000	
	야간(18:00~22:00)	60,000	
전 시 실	㎡ 당 (1일기준)	120	1. 시설별 분할 대관 가능함 2.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야외공연장	"	60	

2. 부대시설사용료

가. 부대시설 및 무대조명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냉 · 난방	냉 방	시간당	연료시가의 10%가산	1.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난 방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2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음향반사판		30,000	
	고무깔판		50,000	
	덧 마 루	3.3㎡당	20,000	
	의자, 보면대	10set당	10,000	
피아노	스타인웨이	1회	5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	40,000	
	소공연장		20,000	
조 명 기자재	팔로우핀라이트	1대/1회	1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썬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파라이트64	개당/1회	2,000	
	파라이트46	8대(1조)/1회	5,000	
	서스포라이트	개당/1회	3,000	
	무빙라이트	1대/1회	50,000	
	LED CYC 라이트	1대/1회	15,000	
	드라이아이스기	1대/1회	10,000	
	헤이저	1대/1회	10,000	
	포그머신	1대/1회	10,000	
	로우 포그머신	1대/1회	10,000	

나. 무대음향 및 연습실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음향 시설	음향기본	1회	5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무선마이크	1대/1회	20,000	
	유선마이크	1대/1회	10,000	
	인터컴(무선)	1회	20,000	
	모니터스피커	1대/1회	20,000	
	전시실 방송장비	1회	50,000	
영상 시설	빔프로젝트(중앙)	1회	10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객석모니터(좌,우)	1회	100,000	
	녹화	1회	100,000	
기 타	연습실	1회(4시간)	40,000	

[별표 2]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1조의2 관련)

대 상	비 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구미시 인구정책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40%
경상북도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0%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상기,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이란 -- ----- ----- ----- -----.
제2조의2(명칭과 위치)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에 둔다. ② (생략)	제2조의2(명칭과 위치) ① 예술회관----- -----.
제2조의3(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조의3(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 예술회관----- ----- ----- -----.
제3조(사용허가)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제3조(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② · ③ (생 략)

제5조(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별
표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9조(허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
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
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 6.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
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1조(관람료) ① ~ ⑥ (생 략)

⑦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 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①-----
----- 별
표1-----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취소) ①-----

-----.

1. ----- 조례 시행규
칙-----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 사용기간 중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용에 대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2(관람료 할인 등)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 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해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할인 대상과 비율은 별표2와 같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KTX	100분의 50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고 궁	100분의 100
7. 능 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소 관 부 서		문화예술회관
입 안 자	관 장	윤 희 선
	팀 장	송 현 정
	담 당 자	박 정 선 (480-4554)